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828
----------	-------

발의연월일 : 2026. 5. 6.

발 의 자 : 조배숙 · 김예지 · 김은혜  
이성권 · 한기호 · 정일영  
박 정 · 민병덕 · 이소희  
김용태 · 성일종 · 광규택  
김민전 · 박성준 · 김선교  
윤상현 · 박충권 · 박성민  
고동진 · 박준태 · 신동욱  
서명옥 · 이종배 · 박형수  
박덕흠 · 최보윤 · 우재준  
권영진 · 강승규 · 이달희  
임종득 · 김재섭 · 정동만  
유상범 · 최수진 · 김기현  
전용기 · 유동수 · 백혜련  
허종식 · 유용원 · 박성훈  
이만희 · 이인선 · 나경원  
박선원 · 조정훈 · 김성원  
서천호 · 김대식 · 서일준  
백종현 · 김정재 · 김소희  
정성국 · 강명구 · 이현승  
김미애 · 김승수 의원  
(59인)

## 제안이유

최근 지능화·조직화된 사기 범죄는 2023년 약 35만 건에서 2024년 42만 건으로 급증하며 국민의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옥에 가도 남는 장사’ 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실정임.

특히 현행 사법체계와 수사 제도만으로는 고도로 진화하는 조직사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거세며, 피해자들의 억울함과 사회적 손실 또한 가중되고 있음.

이에 본 법안은 조직적 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신비공개 및 위장수사 등 수사 특례를 도입하고, 사법협상 제도를 통해 수사 체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또한,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써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피해재산으로 추정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두어 재산 은닉 통로를 원천 차단하고,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복잡한 소송 없이도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나아가 금융·회계·정보통신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위원 제도를 도입하여 지능화된 사기 수법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며, 조직사기 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조직적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직적·계획적 편취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검사 등은 조직사기 범죄의 수사 또는 피해재산의 소재 파악을 위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음(안 제7조)
- 다. 사법경찰관리는 조직사기 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수사 및 위장수사를 할 수 있음(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 라. 수사기관은 조직사기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 회계, 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마. 통상의 구속기간 내에 수사를 종결하기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바. 조직사기 범죄의 재판에 관하여 외국의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사. 편취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처벌하도록 함(안 제21조)
- 아. 조직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은 몰수·추징·환부하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 자. 수사기관과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 차.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금액 내역을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함(안 제33조)
- 카. 과잉가압류의 제한에 대한 특례와 배상명령의 특례를 규정함 (안 제37조)
- 타. 조직사기 범죄의 피의자 및 피고인이 범인검거, 피해재산 환수 등에 기여한 경우 검사는 법원에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 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장치로 녹화 및 보존하여야 함(안 제42조부터 제43조까지)
- 하. 등록된 조직사기 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부터 제50조까지)

## 조직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직적·계획적 편취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편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및 그 미수범의 죄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의 죄

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죄

2. “조직사기 범죄”란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범죄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조직사기 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피해재산”이란 조직사기 범죄로 인해 그 피해자로부터 편취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5. “피해인정재산”이란 피해재산에서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제외한 재산으로서 검사가 그 제외한 범위를 확인한 재산을 말한다.

가. 피해자가 피해재산 중 반환받은 재산

나. 피해자가 피해재산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가액(價額)에 상당하는 재산

6. “금융회사”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7. “조직사기이용계좌”란 조직사기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8. “피해금”이란 조직사기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조직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 피해자가 교부한 금전 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을 말한다.

9. “조직사기 피해자 지원법인”이란 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의 기여와 조직사기 범죄의 진상규명, 수사협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조직사기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재산의 피해자에 대한 환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2장 수사절차 등

제4조(금융거래자료 제공) 조직사기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의 장에게 조직사기 범죄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국제공조체계의 구축 등) 수사기관은 조직사기 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산의 몰수·추징·환부를 위한 외국 정부 및 국제형사경찰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술 및 정보의 공유, 합동수사 등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해외 피해재산 환수를 위한 협력) ① 수사기관은 조직사기 범죄와 관련된 해외 소재 피해재산의 환수를 위하여 외국 수사기관 및 국제형사경찰기구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자·다자 조약, 실무 협약(MOU) 체결 및 전담 연락관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존의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피해재산의 환수(還收)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피해재산의 환수를 요청하는 경우 환수요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환수요청서를 직접 외국에 송부할 수 있다.

⑤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4항에 따른 환수요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관계상 환수요청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외국으로부터 피해재산의 환수는 외교부장관이 행한다.

⑦ 외교부장관은 환수받은 피해재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이 이관받은 피해재산의 피해자에의 환부에 관하여는 제25조에 따른다.

제7조(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①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조직사기 범죄의 수사 또는 그 피해재산의 소재 파악을 위하여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직사기 범죄의 수사 또는 그 피해재산의 소재 파악을 위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직사기 범죄의 수사 또는 그 피해재산의 소재 파악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및 그 청구, 긴급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의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다.

제8조(조직사기 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조직사기 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조직사기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조직사기 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제8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3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부한다.

⑥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⑦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의 요건이 존속하여 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긴급 신분비공개 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조직사기 범죄에 대하여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비공개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제8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지만 제9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⑤ 사법경찰관리는 제4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11조(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사법경찰관리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조직사기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조직사기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3.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12조(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이

하 “국가수사본부장”이라 한다)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 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준수사항) 사법경찰관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한다.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집행·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면책)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법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법경찰관리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수사 지원 및 교육)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승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고,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수사자문위원의 수사 참여 및 자문) ① 수사기관은 조직사기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변호인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금융, 회계, 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자문위원(이하 “수사자문위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련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상의 비밀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조직사기 범죄 관련 자산의 보유 현황에 관한 분석
2. 금융거래 기록 및 회계자료의 분석
3. 조직사기 범죄에 관련 디지털포렌식 분석
4. 조직사기 범죄의 피해 규모의 산정 및 피해자별 피해현황의 검토
5. 그 밖에 조직사기 범죄의 수사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사항

- ② 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수사기관은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 ④ 수사기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형사소송법」 제279조의7 및 제279조의8은 수사자문위원에게 준용한다.

제18조(구속기간의 특례) ① 지방법원판사는 조직사기 범죄로서 다수의 공범 또는 피해자가 존재하는 등의 사정으로 통상의 구속기간 내에 수사를 종결하기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② 지방법원판사는 조직사기 범죄로서 다수의 공범 또는 피해자가

존재하는 등의 사정으로 통상의 구속기간 내에 수사를 종결하기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지방법원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수사의 필요성,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19조(외국 수사기관 작성 진술의 증거능력) 조직사기 범죄의 재판에 관하여 외국의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한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 따라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제20조(재판의 병합 및 이송의 특례) ① 조직사기 범죄에 관하여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관련사건(「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경우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심리의 신속한 진행 또는 신속한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직사기 범죄에 관한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검사가 심리의 신속한 진행과 신속한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라 병합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하여야 한다.

### 제3장 처벌 및 몰수·추징·환부

제21조(조직사기 범죄의 처벌) ① 편취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3. 수괴·간부 외의 사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그 단체 또는 집단의 활동을 통하여 편취범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한다.

제22조(피해재산의 몰수) ① 조직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은 몰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피해재산이 피해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는 피해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 중 피해재산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정할 수 있다.

③ 피해재산을 산정할 때에는 범죄행위를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취득한 재산이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재산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피해재산으로 추정한다.

제23조(몰수의 요건 등) ① 제22조에 따른 몰수는 피해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범인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情)을 알면서 그 피해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피해재산 또는 혼합재산의 취득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그 피해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

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② 범인 외의 자가 그 정을 알지 못하고 그 피해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피해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무상(無償) 또는 현저한 저가(低價)로 귀속된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③ 지상권, 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제22조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에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한 때 또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이를 존속시킨다.

제24조(추징) ① 피해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②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인 외의 자로부터 몰수하여야 할 피해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25조(피해재산의 환부) ① 이 법에 따라 몰수·추징된 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에도 불구하고 국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 피해자의 피해인정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환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피해재산의 환부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조직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조직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조직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조직사기 범죄와 관련된 조직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여 해당 조직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조직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 및 피해자·피해금의 통지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 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조직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조직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조직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점검의 결과 조직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한다는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하며, 제3호에 따른 피해자에게는 제26조제3항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조직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하 “명의인”이라 한다)
2. 제26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신청을 한 피해자
3. 제26조제3항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통지된 피해자

4.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5. 금융감독원

6. 수사기관.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가 된 조직사기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종료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의 개시

4. 질권(質權)의 설정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명의인 또는 피해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절차·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금융회사는 제27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26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경우
2. 제27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3. 제27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가 개시된 경우
4. 제27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5. 지급정지된 후에 제27조제5항에 따라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6. 제27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조직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3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조직사기 범죄와 관련하여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
2. 조직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금융회사, 점포 및 예금 등의 종별 및 계좌번호
3. 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공고 전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채권소멸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
5. 제29조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신청의 방법 및 절차
6. 제30조에 따른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감독원은 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명의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9조(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① 제28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조직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

내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제28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조직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한 추가 피해자와 피해금을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통지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공고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전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일로부터 제28조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할 수 있다.

1. 해당 계좌가 조직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2. 제32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조직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조직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제26조제3항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통지된 피해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5조까지에서 같다)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직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다만,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직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조직사기 범죄의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에 한정한다.
  3.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조직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4.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1.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2.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해당 조직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조직사기 범죄의 피해금에 한정한다)
  3. 제30조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 다만, 명의인이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 ③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명의인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채권의 소멸) ① 명의인의 채권(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4항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한다)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명의인,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해당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
2.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3조(피해환급금의 산정 및 지급) ① 금융감독원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해환급금은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총피해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금액으로 한다.

③ 금융감독원은 제2항에 따른 피해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금융회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1. 해당 조직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금의 전액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의 피해자 및 그 승계인
2. 해당 조직사기 범죄 등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자
3. 해당 조직사기 범죄 등에 공범으로 가담하였거나 자신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그 밖에 피해환급금의 결정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자는 제27조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그 피해구제 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35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피해자가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조직사기 범죄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제25조에 따른 환부를 받을 권리, 그 밖의 청구권은 환급을 받은 한도에서 소멸된다.

제36조(소멸채권 환급 청구) ① 제32조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7조(과잉가압류 제한에 대한 특례) ① 법원은 피해자가 그 피해재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전체 피해 규모에 비추어 청구채권액을 초과하는 가압류가 피해자들에 대한 공평한 환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77조에도 불구하고 청구채권액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하여도 가압류 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피해자가 그 피해재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담보의 제공을 대법

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 여부 입증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으로 담보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으로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전으로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담보액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청구채권액의 100분의 5
2. 채권 가압류의 경우: 청구채권액의 100분의 10
3.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 청구채권액의 100분의 30
4. 그 밖의 가압류의 경우: 청구채권액의 100분의 30

제38조(배상명령의 특례) ① 조직사기 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제4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은 조직사기 범죄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을 함에 있어 조직사기 범죄의 특성, 피해자의 수 및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피해자별·유형별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제39조(준용규정) 이 법에 따른 몰수·추징, 보전처분 및 피해자에 대한 환부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

지 및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 및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 제4장 사범협상 등에 관한 절차

제40조(형의 감경 등) ① 조직사기 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법원에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조직사기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 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를 한 경우

2. 피해재산의 취득·은닉의 경위 또는 소재를 밝혀 피해재산의 환수 또는 피해회복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위해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조직사기 범죄의 규명 또는 피해재산의 환수 등을 위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형을 감경·면제하거나 「형법」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형의 감경·면제, 집행의 유예 및

그 요청의 절차, 방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5장 피해자 보호 및 단체 지원

제41조(수사 및 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 보호) ① 피해자는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통해 조직사기 범죄 및 그 피해재산에 관한 수사·몰수·추징·보전·환부 등의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피해자는 몰수·추징·보전·환부 절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수사상의 비밀보호 또는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직사기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2.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

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조서(별도의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 피해자가 영상녹화 장소에 도착한 시각
2.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3. 그 밖에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직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 또는 영상녹화물에 녹음된 내용을 옮겨 적은 녹취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의 방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43조(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① 제42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1.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다만,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의 경우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망

나. 외국 거주

다. 신체적, 정신적 질병·장애

라. 소재불명

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영상녹화물을 유죄의 증거로 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내

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4조(조직사기 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① 조직사기 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조직사기 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45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에 따라 등록된 조직사기 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는 등록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① 등록법인은 제45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을 피해자의 손실 복구(그 범위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의 기여와 조

직사기 범죄 진상규명, 수사협조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등록법인이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등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7조(감독 등)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등록법인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등록법인의 대표자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보고 또는 제출을 거부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직무정지 또는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법인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청

문을 하여야 한다.

제48조(등록법인 오인 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등록법인이 아니면서 등록법인으로 표시하거나 등록법인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재판 등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등록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사절차에서 수사,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수수료 등의 금품 수수 금지) 등록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피해자를 보호·지원한다는 이유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장 포상금

제51조(포상금) ① 국가수사본부장은 조직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그 수사에 중대한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장 벌칙

제52조(벌칙) ① 제1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제46조제1항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50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과태료)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